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호로 2022년 10월 21일 남완현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의 경쟁 제한·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변호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10.20.~10.24.)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위촉 추천대상의 자격 기준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입법·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 추천 대상자 중 변호사의 등록 협회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개정함.

○ 검토결과

- 현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서 경쟁 제한(진입제한)적 자치법규로 분류되었음.
- 「변호사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며,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함.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의 연합회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64조에 따라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규정된 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방변호사회임.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 과제」 중 ‘진입제한’에 대한 과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호사 등록 협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변호사법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